

『공유재산 사용허가 [선기동 액화 수소충전소 구축]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가. 구미시 소유 부지인 선기동 447-6, 448-4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자 함에 따라,

나. 공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 대상 공유재산(토지)

(1) 지번(목) : 경상북도 구미시 선기동 447-6(답), 448-4(답)

(2) 사용면적 : 대상면적 637m²

나. 수소충전소 구축 개요

(1) 사업내용 : 환경부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민간자본보조사업

(2) 사업기간 : 최초 10년, 1회 연장 10년(총 사업기간 20년)

(3) 사 업 비 : 75억원(국비 42억, 민간 33억)

(4) 사업규모 : 수소충전소 충전용량 120kg/hr, 디스펜서 2기

상용(버스/트럭) 6대/시간, 승용 24대/시간

다. 사용허가의 필요성

(1) 수소충전소 구축은 친환경차량 전환 가속화로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2050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기 위한 수소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

(2) 친환경 차량 보급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의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

라. 추진실적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환경부 역무대행) 주관 '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 특수 수소충전소 공모 선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5.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사용허가 [선기동 액화 수소충전소 구축] 동의안」 은,

- 구미시 소유 부지인 선기동 447-6(답), 448-4(답) 총 면적 637㎡에 영구시설물(액화 수소충전소) 축조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 환경부 주관 민간사업자 공모로 영남에너지서비스가 선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75억원(국비 42억, 민간 33억)으로 수소충전소 충전시스템이 설치되면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및 시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어 공유재산 사용허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영구시설물(액화 수소충전소) 축조를 위하여 건축허가 등 개별법에 의한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